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883-1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4. 4. 22.

제안자 : 박선미 의원

1. 수정이유

인용 법규명을 명시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인용 법규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6조”를 “시행규칙 제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행령”을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 중 “시행령 제14조의5”를 “영 제14조의5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원안·수정안대비표

| 원 안 | 수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<u>제6조에</u>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6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) ① <u>시행령</u> 제14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</p> | <p>제8조(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시행규칙</u> <u>제6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) ①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 |

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2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-----.

1. 영 제14조의5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(이하 “특별교통수단등”이라 한다)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1. 1.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요율
5.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

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, 장애인·노인·여성·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

2.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3. 장애인·노인·여성·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이 생길 경우,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. 1.>
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2.>
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 삭제

제8조(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)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. 1.>

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사고·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<개정 2023. 8. 4.>

2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<개정 2023. 8. 4.>

3.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<개정 2023. 8. 4.>

4.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 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거주자

5. <삭제 2023.8.4.>

제10조(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·심사)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1. 1.>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인 확인 서류

가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

나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: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가.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 <개정 2023. 1. 1.>

나. 그 밖의 사람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

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
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(이하 “진단기관등”이라 한다.)가
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
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

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
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
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
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
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
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
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
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.

⑥ 삭제

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
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.

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, 이용
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
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. 1.>

제11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) <삭제 2023.1.1.>

제12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) <삭제 2023.1.1.>

제13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)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,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시간,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제9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 절차나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2. 9. 2.>

제14조(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)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,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,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5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)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은 「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④ 삭제

제16조(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) 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

1. 하남시 관할구역 안
2. 경기도
3. 서울특별시
4. 인천광역시

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·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1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: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
2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(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, 도시철도차량, 철도차량, 비행기, 선박 등)이 있는 경우: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
3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: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

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.

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

심의를 거쳐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
2.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
3.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
4.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5.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6.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·연계 지원
7. 출발지·도착지·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
8.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
9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. 다만,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영 제14조의5에 따른 기관 및 단체
2.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·인력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

3. 삭제

4. 삭제

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<다른조례의 개정 2023.5.1.>

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한다.

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1. 1.>

⑧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(교육)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
 2. 장애인의 인권
 3. 교통약자서비스
 4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 삭제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